

2019년 7월 1일 입원료 변경사항

-
-
- 1. 2,3인실 입원료 보험급여적용
- 2. 1인실입원료 산정방법 변경
- 3. 자동차보험 변경사항
-

1. 2,3인실 입원료 보험급여적용

- ◆ 적용일자 : 2019년 7월 1일
- ◆ 적용대상 : 병원, 한방병원 (요양병원제외)
- ◆ 변경내용 : 병원, 한방병원 2,3인실 입원료 보험급여 적용
- ◆ 본인부담 :

구분	1일~15일	16일~30일	31일이상
2인실	40%	40%	40%
3인실	30%	30%	30%

2020년 1월 1일 이후

구분	1일~15일	16일~30일	31일이상
2인실	40%	45%	50%
3인실	30%	35%	40%

건강보험, 의료급여 구분없이 동일함
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안함
지원금 지원 기준

긴급복지의료지원 (G) 인 경우만 지원

반드시, 병실등록에서 병실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.

병실구분

0 일반병실

1 1인실

2 2인실

3 3인실

4 4인실

5 5인실

6 특실

7 응급실

종료

2. 1인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

- ◆ 적용일자 : 2019년 7월 1일
- ◆ 적용대상 : 병원, 한방병원 (요양병원제외)
- ◆ 변경내용 :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부담(입원료 청구할 수 없음)

구분	2019년 7월 1일 이전	2019년 7월 1일 이후
입원료	기본입원료 + 1인실 비급여차액	1인실 입원료(금액없음)
본인부담	기본입원료 * 20% + 1인실 비급여차액	1인실 입원료 전액 비급여

단, 만6세미만 소아환자,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산모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입원하는 환자부터 적용

분만인경우 등록방법 : 입퇴원등록 `기타종류`항목에 `0 분만` 추가

기타종류	0
과목	0 해당사항없음 0 분만

◆ 1인실 입원료 코드

구분	의과	한방
병원	AB902	15902
한방병원	AB903	15903

청구시 특정내역 기재 :

1인실 입원기간 기재

JX999 : CCYYMMDD/CCYYMMDD

3. 자동차보험 변경사항

◆ 2,3인실 입원료 보험적용

본인부담 : 2인실(40%), 3인실(30%)

입원사유코드

M - 치료상 부득이하게 2~3인실에 입원한경우

: 본인부담없음

E - 4인실이상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~3인실에 입원한경우

: 7일이전 - 본인부담없음

7일이후 - 본인부담발생

W - 본인이 원하여 2~3인실에 입원한 경우

: 본인부담 발생

청구방법

특정내역 JJ006기재

JJ006 : X(1)/ccyymmdd/ccyymmdd/X(400)

입원사유코드/시작일/종료일/구체적사유(사유 'M'인경우)

일투기재방법

본인부담 없음 : 일투 1로기재하여 청구

본인부담 있음 : 일투 0.6(3인실은 0.7)로 기재하여 청구

외박인경우 - 0.25(0.35 * 0.7)로 기재하여 청구

◆ 1인실입원료 :

변경사항없음

기본입원료 + 상급병실료차액 로 산정